

IV. 프랑스

□ FY2011 : 2011. 1~2011. 12

- 2011년 예산법안(LF 2011: L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1)은 2010년 9월 28일에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28일 예산법(LF 2011: Loi de finance)으로 통과

□ 출처

- 2011년 예산법안 (LF 2011: Loi n° 2010-1657 de finances pour 2011)
- 2011년 예산안 관련 언론공개 자료 (프랑스 정부 발표)
 - Les grandes lignes, Les chiffres clés 등
- 2011-2014 중장기 예산법안 (LPFP 2011 a 2014: Loi n° 2010-1645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pour les années 2011 a 2014)
- 2011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 (LFSS 2011: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)
 - Les chiffres clés 등

□ 환율 : 1유로 = 약 1,532.94원 (2010년도 평균)

□ 경제규모 : 2009년 경상GDP 2조 1,733억달러(우리나라 1.6배 수준)

□ 수출입의 대GDP 비율(명목) : 2009년 기준 48.0%(우리나라 95.9%)

□ 인구 : 6,449만명(2009년 기준)

— <요 약> —

◇ 경제 및 재정전망

- 2010년과 2011년 프랑스 경제는 각각 1.5%와 2.0%의 성장률을 보이며 서서히 회복할 전망
- 프랑스 중기재정 예산법안 2011-2014에 따르면, GDP 대비 세출은 감소하고 세입은 증가하여, 2010년 7.7%이던 재정적자는 2011년 4.3%로 크게 감소하고, 2014년 1.8%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
- GDP 대비 채무비율은 경기침체, 높은 재정적자, 낮은 경제성장률로 인해 2010년 82.9%에서 2011년 86.2%로 상승할 전망

◇ 예산기조

- 2011년 예산법안은 2% 성장률과 1.5% 물가성장률을 기준으로 하며, 공공지출 안정화와 세제혜택 축소 등을 통해 GDP 대비 6%(916억유로)까지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

◇ 예산안 내용

- (세입) 2011년 순세입은 2010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, 경기회복으로 인해 5.6%의 순세입 증가와 세제혜택 축소 등을 통해 17억유로 세입 증가 예측
- (세출) 지출통제를 통한 재정적자 감축을 주요 목표로 삼고, 여유재원을 타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

◇ 주요재정정책

- (재정건전화) 채무와 연금 관련 비용을 제외한 지출 안정화로 연평균 0.6%의 지출증가율을 목표하고 있으며, 2011년부터 실행되는 100억유로에 달하는 세제혜택 축소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
- (2011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) 80억유로의 새로운 재원마련과 지출통제(의료 비지출 통제, 연금개혁법) 정책으로 재정적자의 대대적인 감축을 목표로 하였음

<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>

| 일시 | 주요 정책 및 사건 | 참고자료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|
| 2008. 12. 4 | 제1차 경제위기 대응정책안 | 재정동향 1호 |
| 2009. 3. 4 | 제2차 경제위기 대응정책안 | |
| 2009. 5. 13 | 정부정책개혁보고서(RGPP) 제출 | |
| 2009. 9. 30 제출 12. 18 의회통과 | FY2010 예산법안(LF 2010) | |
| 2009. 10. 1 제출 | FY2010 사회보장예산안(PLFSS 2010) | |
| 2009. 12. 14일 | 미래투자전략특별위원회의 미래성장계획안 최종안 제시 | |
| 2010. 1. 29 제출 2. 25 의회통과 | FY2010 1차 수정예산(LFR 2010) | |
| 2010. 3. 4 | 국가총사업전략 발표 | 재정동향 2호 |
| 2010. 4. 21 제출 5. 8 | FY2010 2차 수정예산(LFR 2010) | |
| 2010. 6. 3 의회통과 | FY2010 3차 수정예산(LFR 2010) | 재정동향 4호 |
| 2010. 6. 30 | 4차 정부정책개혁보고서 발표 | |
| 2010. 7. 28 | 사업소세 감세 보고서 발표 | |
| 2010. 9. 28 제출 12. 28 의회통과 | 2011년 예산법안(LF 2011) 및 2011-2014 중장기 예산법안(LFPF 2011 a 2014) | |
| 2010. 9. 28 제출 12. 21 의회통과 | 2011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(LFSS 2011) | |
| 2010. 10. 27 | 연금개혁법안 통과 | |

1. 경제 및 재정전망

가. 경제전망

- 2010년 2사분기부터 0.7%의 성장률 (1사분기의 성장률 0.2%)을 보이며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있음
 - 2008년 이래 처음으로 투자가 증가했고, 민간소비가 증가하였으며 2분기 연속으로 실업률이 감소하였음
 - 활발한 무역활동과 2009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지속된 유로의 평가절하가 프랑스 경기회복에 기여하였음

- 2010년과 2011년에 프랑스는 각각 1.5%와 2.0%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

<표 IV-1> 프랑스 거시경제 전망

(단위: %)

| | 2009 | 2010 | 2011 |
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
| 프랑스 GDP | -2.6 | 1.5 | 2 |
| 민간소비 | 0.6 | 1.4 | 1.7 |
| 기업투자 | -8 | -0.9 | 5.5 |
| 수출 | -12.4 | 8.9 | 7.6 |
| 수입 | -10.7 | 7.1 | 6.7 |
| 소비자물가지수(연평균) | 0.1 | 1.5 | 1.5 |

자료: PLF 2011, Ministère de l'Économie, de l'Industrie et de l'Emploi
취합 (Agence France Trésor)

- (소비) 소비는 경기부양 정책과 사회복지 급여지급으로 인해 경제위기 기간 동안 감소하지 않았음

- 2009년 0.6%, 2010년 1.4%에 이어 2011년에는 1.7%의 상승률로 전망
- (기업투자환경) 재고가 감소하고(destocking), 투자 회복으로 기업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으며, 생산성 회복과 기업세(business tax) 철폐로 인해 기업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
- (무역) 수출은 2010년 약 9% 증가하였으며 2011년 수출증가율은 8%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
 - 유로 평가절하 효과가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지체되었고 2011년에는 추세보다 세계무역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
 - 무역 상승률은 2010년 0.3%, 2011년 0.1%로 전망
- (물가상승) 물가상승률은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1.5%정도로 전망
- (고용 및 실업) 2010년 2사분기 동안 59,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, 무역활성화와 유로 평가절하 등에 힘입어 실업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

나. 재정전망

1) 세입 및 세출전망

- (지출) 2010년 4,242억유로, 2011년에는 이보다 15%정도 감소한 3,598억유로가 지출될 것으로 전망
 - 이어 2012년 3,662억유로, 2014년에는 3,791억유로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(수입) 순세입은 2010년 2,547억유로, 2011년에도 이와 비슷한 2,544억유로로 전망하고, 비세입은 2010년 186억유로, 2011년은 이보다 낮은 169억유로로 전망
 - 2014년까지 순세입은 증가추세 보이며 2011년 대비 18% 정도 증가한 3,104억유로로 전망
 - 2011년에 감소세를 보이던 비세입은 2014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며 236억유로 (2011년 대비 28%증가)에 이를 것으로 전망

<표 IV-2> 프랑스 2009-2010년 재정 전망

(단위: 백만유로)

| | 2010 | 2011 | 2012 | 2013 | 2014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지출 | 4,242 | 3,598 | 3,662 | 3,726 | 3,791 |
| 수입 | | | | | |
| 세입 | 2,547 | 2,544 | 2,737 | 2,950 | 3,104 |
| 비세입 | 186 | 169 | 194 | 225 | 236 |

자료: LPFP 2011~2014

2) 재정수지

- 프랑스 중기재정 예산법안 2011-2014에 따르면, GDP 대비 세출은 감소하고 세입은 증가하여, 2010년 7.7%이던 재정적자가 2011년 4.3%로 크게 감소하고, 2014년 1.8%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

<표 IV-3> 프랑스 2009-2014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전망

(단위:%, 10억유로)

| | 2009 | 2010 | 2011 | 2012 | 2013 | 2014 |
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GDP 대비 세출 | 21.4 | 24.6 | 20.4 | 19.8 | 19.4 | 18.9 |
| GDP 대비 세입 | 15.1 | 16.9 | 16.1 | 16.5 | 17 | 17.1 |
| GDP 대비 재정수지 | -6.2 | -7.7 | -4.3 | -3.4 | -2.4 | -1.8 |
| 재정수지 | -117.6 | -150 | -86.4 | -70.7 | -52.3 | -42.3 |

자료: LPFP 2011~2014

3) 부채비율

- 프랑스의 국가채무 비율은 경기침체, 높은 재정적자와 낮은 경제성장률 때문에 2012년까지 증가할 전망

- 2011년에는 경제 회복에 힘입어 GDP 대비 실질 재정수지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
(2010년 7.7% → 2011년 6%)
-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기준으로 국가부채가 2010년 82.9%에서 2011년 86.2%로 증가하고 2012년에는 87.4%까지 증가하였다가, 2013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

<표 IV-4> 프랑스 2009-2014년 부채비율 전망

| | (단위:%)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| 2009 | 2010 | 2011 | 2012 | 2013 | 2014 |
|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¹⁾ | 78.1 | 82.9 | 86.2 | 87.4 | 86.8 | 85.3 |
| 실질재정수지 | -7.5 | -7.7 | -6 | -4.6 | -3 | -2 |

주: 1)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
자료: LPFP 2011-2014

2. 예산기조

- 2011년 예산법안은 2% 성장률과 1.5% 물가성장률을 기준으로 하며, 경기를 둔화시키지 않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GDP 대비 6%(916억유로)까지 재정적자 감소를 목표
 - 지출증가추세 안정화: 정부 채무와 연금에 대한 지출을 제외한 정부지출 삭감 (공공운영과 정부 개입 관련 지출을 5% 감소, 2007년부터 실시된 100,000개 일자리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31,638개 일자리 감소),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지원을 2011년부터 3년간 동결, 의료비 증가률을 각각 2011년 2.9%, 2012년 2.8%로 제한 등
 - 세입확충 : 소득세 구간 한도를 1.5% 인상하였고, 연금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최대부가율을 40%에서 41%로 인상

3. 예산안 내용 (LF 2011)

가. 세입내역

- 2011년 순세입은 2,544억유로로 2010년 수준을 유지
 - 경기회복으로 인해 5.6%의 순세입 증가
 - 2011년 예산법안에서 추진된 세제개편 정책으로 17억유로 증가
 - i) 통신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감면을 철폐 (+11억유로)
 - ii) 개발세 관련된 공제를 수정 (+2억유로)
 - iii) 은행과세 실시 (+5억유로)
 - iv) 배당금 소득공제 철폐 (+2억유로)
 - v) 위와 같이 증가한 세입은 중소기업 리서치에 대한 세금공제 지원으로 부분적으로 차감 (-5억유로)
 - 2011년 예산법안은 연금제도와 사회보장 감채기금(CADES: la Caisse d'Amortissement de la Dette Sociale⁹⁾)의 지속 조치에 초점

나. 세출내역

- 재정적자 감소를 주요 목표로하여 지출을 통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함
 -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지급 재정 여유분을 타목적으로 전환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힘
 - 이와 같은 내용은 다른 여유재원에도 적용됨
 - 분야별 지출은 전년도와 거의 유사
 - 국가정책방향(정책통합, 자유 및 권리보호, EU내 프랑스 지위 확보): 전년대비 약

9) 프랑스 사회보장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채무상환을 목표로 함.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가까운 구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보증을 제공하는 파산이 불가능한 공공기금

2배 증가 (11억유로)

- 체육 및 건강. 청소년 지원: 전년대비 약 1/2 감소 (4억유로)

<표 IV-5> 2010-2011 미션별 세출 내역

(단위: 10억유로)

| 미션 | 2010 본(수정)예산 | 2011 예산법안 |
|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외교(Action extérieure de l'Etat) | 2.63 | 2.97 |
| 일반공공행정(Administration générale et territoriale de l'Etat) | 2.60 | 2.45 |
| 농업·임업·수산업(Agriculture, pêche, alimentation, forêt et affaires rurales) | 3.45 | 3.67 |
| 공공보조 - 저소득층 지원, 외국인 이민자 지원 등(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) | 3.52 | 3.33 |
| 퇴역군인 지원(Anciens combattants, mémoire et liens avec la nation) | 3.43 | 3.32 |
| 정부위원회 및 행정재판(Conseil et contrôle de l'Etat) | 0.57 | 0.59 |
| 문화(Culture) | 2.92 | 2.68 |
| 국방(Défense) | 37.15 | 37.41 |
| 국가정책방향 - 정책통합, 자유 및 권리보호, EU내 프랑스 지위 확보 (Direction de l'action du Gouvernement) | 0.55 | 1.11 |
| 환경친화 및 지속가능개발 (Ecologie développement et aménagement durables) | 10.15 | 9.51 |
| Economie(산업 및 기업 지원) | 1.94 | 2.06 |
| Enseignement scolaire(교육) | 60.85 | 61.79 |
| 공공재정 및 인적자원 관리 - 예산 및 공공개혁 관련 정책 (Gestion des finances publiques et des ressources humaines) | 11.58 | 11.75 |
| 이민 및 통합정책(Immigration, asile et intégration) | 0.56 | 0.56 |
| 법무부(Justice) | 6.86 | 7.14 |
| 언론(Médias) | 1.15 | 1.45 |
| 프랑스령 국가들에 대한 지원(Outre-mer) | 1.99 | 1.98 |
| 균형발전정책(Politique des territoires) | 0.38 | 0.32 |
| R&D 및 고등교육(Recherche et enseignement supérieur) | 24.81 | 25.18 |
| 은퇴자 지원(Régimes sociaux et de retraite) | 5.73 | 6.02 |
| 지방재정지원(Relations avec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) | 2.51 | 2.64 |
| 건강 복지(Santé) | 1.20 | 1.22 |
| 치안(Sécurité) | 16.40 | 16.51 |
| 시민안정 - 자연재해 및 화재 등(Sécurité civile) | 0.43 | 0.43 |
|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 (Solidarité, insertion et égalité des chances) | 12.37 | 12.37 |
| 체육 및 건강, 청소년 지원 (Sport, jeunesse et vie associative) | 0.85 | 0.43 |
| 노동 및 고용(Travail et emploi) | 11.41 | 11.57 |
| 건설 및 주택(Ville et logement) | 7.81 | 7.63 |
| 정부재정관리 - 부채 관리, 국제발행 등 (Engagements financiers de l'Etat) | 44.19 | 46.93 |
| 예비비(Provisions) | 0.12 | 0.34 |
| 경제위기대응정책(Plan de relance de l'économie) | 4.10 | - |
| 의회, 헌법위원회 등(Pouvoirs publics) | 1.02 | 1.02 |
| 합계 | 285.23 | 368.54 |

자료: LPFP 2011-2014, LF 2011

4. 주요 재정정책

가. 재정건전화

<참고> 2008~2010년 프랑스 정부가 수행한 재정건전화 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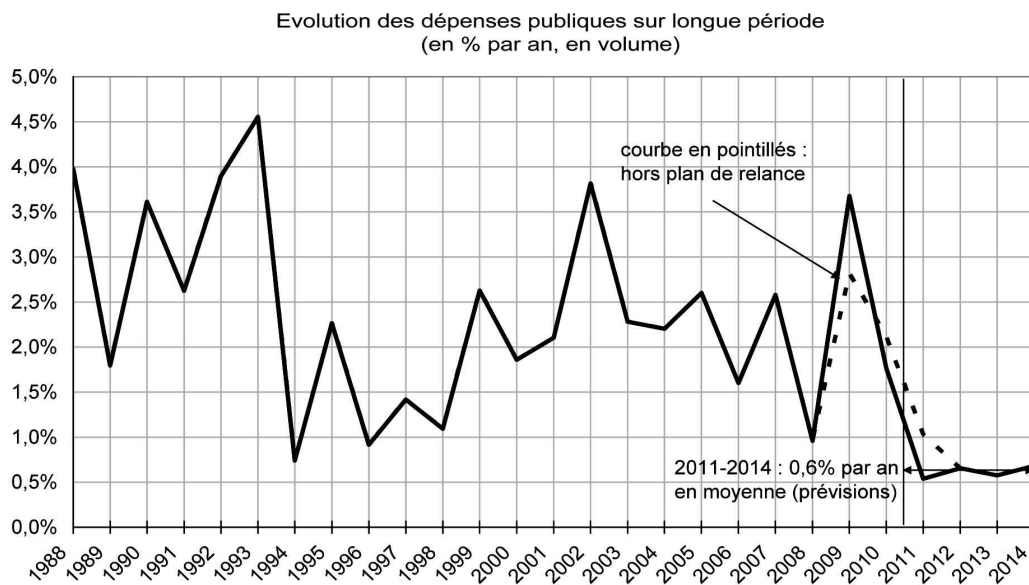
| 날짜 | 주요 내용 | 출처 |
|--------------|---|---------|
| 2008. 12. 4 | - 1차 경제위기 대응정책을 2009~2010년에 한시적으로 집행하여 재정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| 재정동향 1호 |
| 2009. 9. 10 | - 탄소세 도입안 발표 • 2010년 1월부터 석유, 석탄, 가스 사용에 대해 CO ₂ 1톤당 17유로의 탄소세 부과 예정, 이후 점진적으로 세율을 늘릴 계획 • 감세 및 세금환급정책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탄소세 수입으로 충당할 예정 | |
| 2009. 10. 20 | - FY2010 예산안에서 지출통제정책(1.2%) 시행 • 행정부 인력 감축(2010년 34,000명 인력 감축 계획) • 공무원 임금인상 동결 • 정부 운영비용 절감 • 지방정부 보조금 통제 | |
| 2010. 2. 2 | - FY2010-FY2013 재정안정화계획 발표 • 세입: 경쟁력 강화를 통한 (세입) 구조 개편, 탈세 방지 노력 강화 • 세출: 중앙 및 지방정부 지출증가율 통제, 중앙정부 산하기관 비용절감 노력 강화, 사회보장 부문 개혁(의료비 지출증가율 통제) | 재정동향 2호 |
| 2010. 3. 10 | - 금융기관 종사자 보너스에 대한 과세 | 재정동향 4호 |
| 2010. 10. 26 | - 연금개혁법안 통과: 60세인 퇴직 연령을 62세로 상향조정 | |
| 2010. 12. 28 | - FY2011 예산안 및 FY2011-2014 프로그램예산법안에서 채무와 연금에 관련된 지출을 제외한 지출 안정화, 사회보장제도 개혁 | |

자료: 한국조세연구원, 『재정동향』 제1~4호 참조

- 프랑스 중기재정 2011-2014 예산법안은 전례없는 강한 지출통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
- 경기부양책을 종료하면서 연평균 0.6%의 지출증가율 전망
 - 채무와 연금 관련 비용을 제외한 공공지출 안정화, 2011년부터 실행되는 100억유로

- 에 달하는 세제혜택 축소를 통해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
- 재정적자와 연금을 제외한 정부지출 삭감 (공공운영과 정부 개입 관련 지출 5% 삭감, 2007년부터 실시된 100,000개 일자리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31,638개 일자리 감소)
-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지원을 2011년부터 3년간 동결
- 의료보험비 지출 증가율을 2011년 2.9%, 2012년 2.8%로 제한

[그림 IV-1] 재정 지출 추이



자료: LPFP 2011-2014

- 세제지원 철폐 및 조세감면 축소 정책을 2011년부터 시행하여 100억유로 세입증대를 꾀함
 - 2007년부터 실시된 ‘트리플 플레이’(인터넷, IP전화, 텔레비전)에 적용되는 인하 세율이 텔레비전 서비스만 이용시엔 적용되지 않음
 - 환경포럼에서 2020년까지 1%의 전기에너지 사용을 포토볼타릭(전지)로 사용해야 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이 산업분야에 따른 투기 버블이 나타남에 따라 포토볼타

릭(전지) 에너지분야의 세금공제 혜택을 철폐하기로 함

- 누진과세의 형평성과 신고요건을 간편화하기 위해 이혼과 결혼, 동거 등 결혼 상태변화에 따른 가정의 과세조건을 개정하기로 함
- 중소기업 관련 소득 및 투자에 대한 감세제도 개혁(제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)
- 현 소득세의 범위 안에서 전체적으로 10% 감세와 세금공제
- 이와 같은 조치로 징수된 재원의 1/3은 연금기금 재정지원, 1/3 사회복지장 채무보전, 1/3은 재정적자 감소에 배분될 것임

□ IMF는 프랑스 재정적자가 2011년 GDP 대비 6.1%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, 이는 프랑스 정부의 전망(6%)과 견해를 같이 함(2010년 7월 30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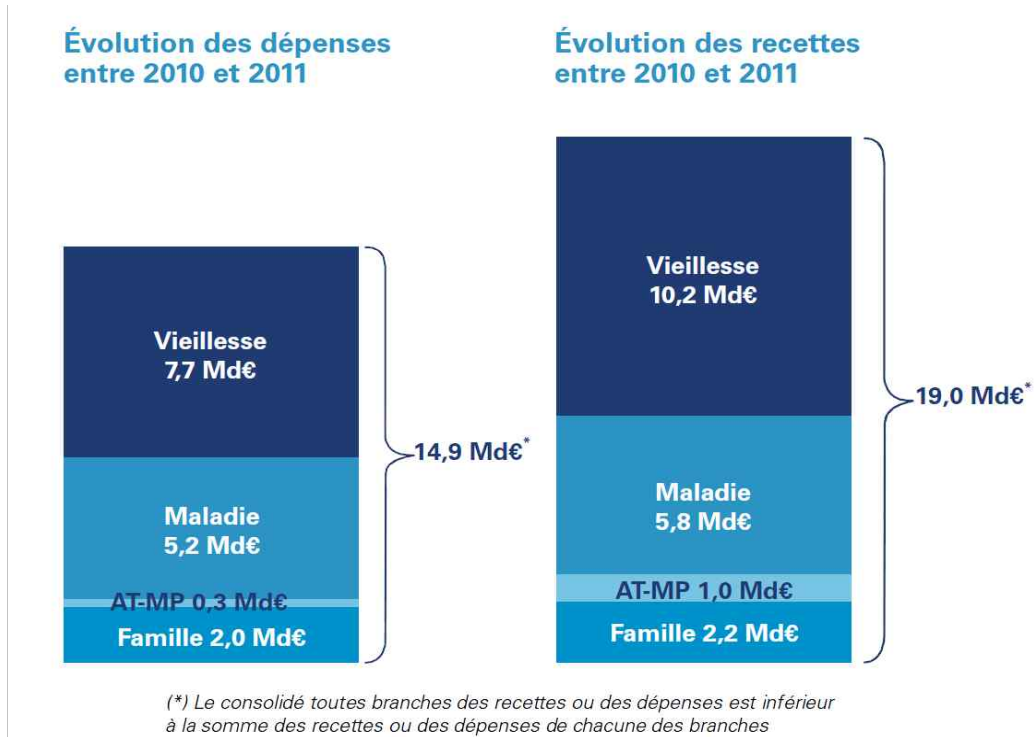
- 이와 같은 재정적자 감소를 위해 IMF는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업소세와 연금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

나. 복지지출 관리 정책

□ 복지 관련 지출과 수입 추이

- 2010년에서 2011년까지 복지 관련 지출은 149억유로 증가하였고, 수입은 이보다 22% 많은 190억유로 증가
 - 노령관련(vieillesse) 재정 지출은 77억유로, 수입은 102억유로 증가
 - 의료관련(maladie) 재정 지출은 52억유로, 수입은 58억유로 증가
 - 산재보험(AT-MP) 관련 재정 지출은 3억유로, 수입은 10억유로 증가
 - 가족관련(Famille) 재정 지출은 20억유로, 수입은 22억유로 증가

[그림 IV-2] 2010-2011 복지 재정 지출과 수입 추이



자료: PLFSS 2011

- 사회보장부문 예산 (2010년 9월 28일에 제출, 12월 21일에 채택)
 - 80억유로의 새로운 재원마련과 지출통제정책을 통해 2008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던 사회보장 부문 재정적자를 2011년 214억유로까지 감소 목표
 - 세제혜택 축소, 연금개혁, 사회보장 채무를 사회보장 감채기금(CADES: la Caisse d'Amortissement de la Dette Sociale)으로 이전 등을 통해 새로운 재원 마련

<표 IV-6> 2011년 사회보장부문 예산

(단위: 10억유로)

| | 2010 결산 | 2011 예산 |
|--|---------|---------|
| 의료보험 (CNAM) | -11.4 | -11.6 |
| 산재보험 (CNAM AT/MP) | -0.5 | 0.1 |
| 법정연금기금 (CNAV) | -8.6 | -6.9 |
| 가족지원금(CNAF) ¹⁾ | -2.6 | -3 |
| 일반 제도 수지(Regime General) ²⁾ | -23.1 | -21.4 |
| 노후연대기금(FSV) ³⁾ | -4.3 | -3.8 |
| 총액 | -27.4 | -25.2 |

주: 1) 가족지원금(CNAF)은 자녀양육과 가족생활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당 및 보조금 지급. 대부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수당이 대부분임

2)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일반제도, 특별제도, 자영업자 제도, 농업노동자 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, 일반제도는 전체 피보험자의 70%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중심적 제도임(박찬영, 199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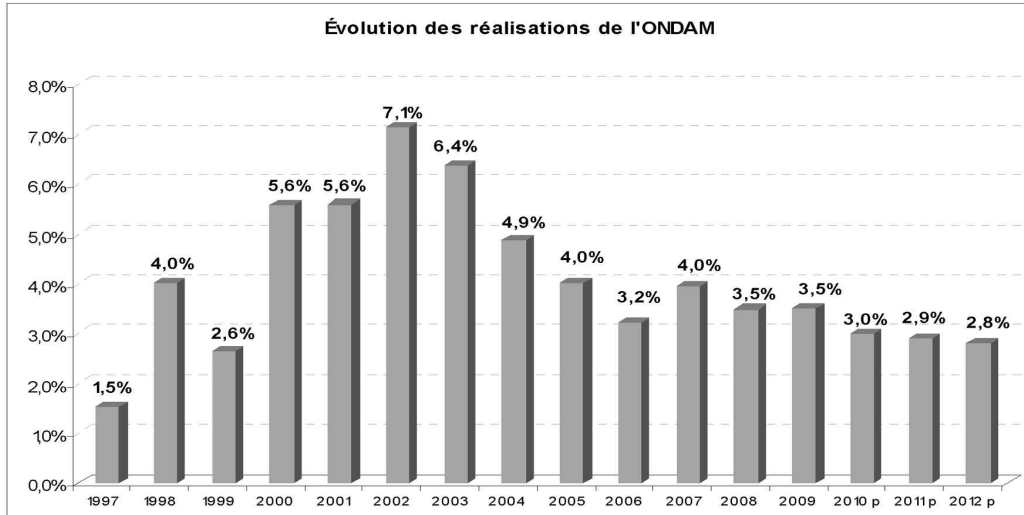
3) 노후연대기금(FSV)은 보충성 급여로서 현재의 소득수준과 법정 최저생활수준의 차이만큼 지급(임춘식 외 6인, 2005)

자료: http://www.budget.gouv.fr/presse/dossiers_de_presse/091001plfss2011/plfss2010.pdf

□ 의료 관련 지출 통제 정책

- 의료비 지출의 통제 강화: 의료보험의 효율성 제고와 고가 진료환자의 보험료 반환을 통해 2011년 의료비 지출증가율(ONDAM) 3% 목표
- 고령인구 관련 정책 강화: 장애인구와 고령인구를 위한 ONDAM은 2011년 3.8%를 목표, 2008-2012 알츠하이머 플랜을 통해 2011년 75개의 관련 의료시설과 35개의 관련요양원(MAIA: Maisons pour l'autonomie et l'intégration des malades d'Alzheimer)을 마련
- 석면 환자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확대
- 각종 보조금 및 사회보장수당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통제 강화

[그림 IV-3] 의료비 지출 증가율 목표 추이와 전망



주: 2010년~2012년(2010p, 2011p, 2012p)은 전망치 수치
 자료: LPFP 2011-2014

□ 연금 개혁

- 연금개혁법안은 2010년 10월 26일 상원의회를 통과하고(226대 233), 이어 10월 27일 하원을 통과하였음
- 2010년 11월 9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10일 공포, 시행되었음
- 연금개혁법은 현행 60세인 퇴직 연령을 62세로 상향조정하고, 연금 100% 수급 개시일을 65세에서 최저 67살까지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
- 정년과 연금수급 개시일 연장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 질 것

<표 IV-7> 연금개혁법안 주요내용

| 이슈 | 주요내용 |
|------------------|--|
| 정년 | 최저 정년 나이를 현행 60세에서 2011년 7월 1일부터 4개월에 1년씩 올려서 1956년생부터 62세에 정년퇴직이 가능 |
| 연금수령 기간 | 연금 100% 수령을 할 수 있는 나이는 기존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 |
| 전문직종 | 14~16세 사이에 사업을 시작한 이는 60세나 그 이전에 퇴직할 수 있음. 정년퇴직 연령은 1년에 4개월씩 증가하지만 60세를 넘지 않음 |
|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여성 |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퇴직연령은 연금수령 기간에 관계 없이 65세로 유지 |
| 장애아를 가진 여성 | 장애아를 가진 여성의 100% 연금 수령 나이는 기존 65세로 유지 |
| 15년-3자녀 | ‘15년-3자녀’는 15년동안 공공부문에 종사하며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수급자들에게 지급정지. 단,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55세 이상의 여성에게는 계속 지급 |
| 임산부 | 산전후 휴가는 정년퇴직 연금 수령시 보전함 |
| 남녀 평등 임금 | 기업은 남녀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함 |
| 노령자 취업 | 55세 이상의 노령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근로자 1년치 임금의 14%에 해당되는 재정 지원 |
| 장애 근로자 | 장애가 있는 근로자의 조기정년퇴직을 인정 |
| 공공서비스 직종 |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최저 근무년수를 15년에서 2년으로 낮춤 |
| 석면피해자의 조기 정년퇴직 | 석면피해로 인한 조기 퇴직자들은 변동없이 60세의 조기 퇴직 적용 |
| 연금보조금 | 정년에 근접한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보조금은 변동 없이 지급 |

출처: <http://www.retraites2010.fr/>